

2019년도 제1회 소방재난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검 토 보 고 서

I. 제 안 경 위

-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년 5월 23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5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II. 제 안 사 유

- '19년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금 확정통보 및 소방특별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고 최근 사회적 이슈가된 미세먼지 저감대책 및 안전취약계층(고시원) 대형 인명피해 경감을 위해 저녹스 보일러 교체, 소방서 차고 매연배출저감장치 설치 및 화재저감 소방안전대책 추진 등 10개 사업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하는 것임.

III. 추가경정예산(안)

1. 소방재난본부 총괄

가. 세 입 예 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률(%)
총	계	861,184	845,556	15,628	1.9
일	반 회 계	0	0	0	0
특	별 회 계	861,184	845,556	15,628	1.9

나. 세 출 예 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률(%)
총	계	1,696,232	1,677,826	18,406	1.1
일	반 회 계	835,048	832,270	2,778	0.3
특	별 회 계	861,184	845,556	15,628	1.9

2. 회계별 예산 편성현황

가. 세입예산

1) 일반회계 : 해당 없음

2) 소방안전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률(%)
총 계	861,184	845,556	15,628	1.9
세 외 수 입	2,754	2,754	-	-
국고보조금 등	8,401	5,377	3,024	36.0
보전수입 등	14,981	5,155	9,826	190.6
전입금(기타회계전입금)	835,048	832,270	2,778	0.3
지 역 자 원 시 설 세 (특 정 부 동 산 분)	297,549	284,467	13,082	4.6
소 방 안 전 교 부 세	20,292	24,750	△4,458	△18.0
일 반 회 계 전 입 금	517,207	523,053	△5,846	△1.1

나. 세출예산

1)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률(%)	
계	835,048	832,270	2,778	0.3	
일 반 회 계	행 정 운 영 경 비	0	0	0	0
	재 무 활 동	835,048	832,270	2,778	0.3
	소 방 안 전 특 별 회 계 일 반 전 출 금	835,048	832,270	2,778	0.3
	국 고 보 조 금 반 납	0	0	0	0
	정 책 사 업 비	0	0	0	0

2) 소방안전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률(%)
총계	861,184	845,556	15,628	1.9
행정운영경비	640,777	640,777	-	-
재무활동	67	67	-	-
소방안전특별회계 일반전출금	0	0	-	-
국고보조금반납	67	67	-	-
정책사업비	219,234	203,606	15,628	7.7
예비비	1,106	1,106	-	-

3. 회계별 사업내역

가. 일반회계: 해당 없음

나. 소방안전특별회계

사 업 내 역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명	추경	기정	증감	사유	사업별 설명서
총계		56,429	40,801	15,628		
계속사업	강일119안전센터 신설 (신설부지 매입)	3,834	105	3,729	부지 사용권을 확보하여 토지측량 및 지반조사 등 설계 작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부지매입을 추경예산에 반영필요	P.1789
	소방관서 시설물 유지보수 (소방청사 석면제거, 저녹스 보일러 교체, LED 조명등 교체)	15,633	13,413	2,220	소방청사 내 석면(1급 발암물질) 제거하고, 공공청사 온실가스 25% 의무감축을 위한 저녹스 보일러 및 LED조명등 교체를 위하여 추경예산 반영 필요	P.1794
	업무용정수물품 및 기타 행정용품 구입 (노후 개인사물함 교체)	1,482	947	535	노후화된 개인장비 사물함을 교체하여 소방대원 출동대기 환경 개선 및 업무능률 향상을 위하여	P.1801

구분	사 업 명	추 경	기 정	증 감	사 유	사업별 설명서
					추경예산 반영 필요	
	소방활동지원 (소방관서 취사도구 전 면 교체)	21,684	21,243	441	재난현장 출동대기 직원들의 단체급 식 제공을 위해 운영중인 식당의 취 사도구 물품 등이 장기사용으로 노 후되어 직원 식품위생관리 시스템 개선을 위하여 전면교체 추경예산이 반영 필요	P.1805
	구급대 전문화 향상 (감염 관찰실 설치)	868	547	321	최근에 발생한 홍역 등 감염병 발생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환자 이송 구급대원 추적관리·관찰시 스템 구축 등 감염예방관리 대책 마련을 위하여 추경예산 반영 필 요	P.1809
	의용소방대 활동수당 등 (의용소방대 피복교체)	3,407	2,643	764	의용소방대 복제세척 개정에 따라 의용소방대 동기동복(상·하) 교체 및 夏활동복 신규 보강을 위하여 추경예산 반영 필요 * 소방청 훈령(제63호, '18. 12.4. 일부개정)	P.1814
	화재저감 소방안전 대책 추진 (노후 숙박형 다중이용업 소 SP 설치지원)	7,563	1,515	6,048	화재위험에 방치되어 있는 고시 원 및 산후조리원에 간이스프링 클러 긴급설치를 위해 국가:지방: 민간(1:1:1) 일정비율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경예산 반영 필요 * '19년도 정부추경 요구진행중 (국비 3,024백만원)	P.1819
	소방서 차고 매연배 출저감장치 설치	735	165	570	소방서 차고내 미세먼저 저감 으로 대기질 개선 및 소방대원 의 호흡기 건강보호를 위하여 추경예산 반영 필요	P.1823
	소방차량 교체 및 보 강 (소방안전교부금 감액에 따른 재원조정)	-	-	-	소방안전교부금 감액에 따른 재원조정임. * 소방안전교부세 감액→자체 재원 증액(4,458백만원)	P.1827
	화재조사 업무의 전 문화 (화재조사 분석 장비 보강)	1,223	223	1,000	소방기본법 개정('18.10.04)에 따라 화재조사전담부서에서 갖 추어야 할 장비를 보강하고, 화재증거물 감정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확보를 위하여 추 경예산 반영 필요	P.1831

IV. 검토의견

1. 개요

1) 일반회계

가) 세입 : 해당 없음.

나) 세출 : 기정예산 대비 0.3% 증액된 8,350억 48백만 원임.

2) 소방안전특별회계

가) 세입 : 기정예산 대비 1.9% 증액된 8,611억 84백만 원임.

나) 세출 : (순계)기정예산 대비 1.9% 증액된 8,611억 84백만 원임.

- 소방재난본부 추가경정예산안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추경 세입은 해당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 8,322억 70백만 원 대비 0.3% 증액(27억 78백만 원)된 8,350억 48백만 원이며,
- 소방안전특별회계 추경 세입은 기정예산 8,455억 56백만 원 대비 1.9% 증액(156억 28백만 원)된 8,611억 84백만 원이고, 세출은 순계예산¹⁾규모로 기정예산 8,455억 56백만 원 대비 1.9% 증액(156억 28백만 원)된 8,611억 84백만 원임.
- 금회 추경편성은 총 10개 사업으로 9개의 증액사업과 1개의 재원조정사업이며, 이 중 증액사업은 ‘강일119안전센터 신설’, ‘화재저감 소방안전대책 추진’, ‘화재조사 업무의 전문화’ 등의 국고보조금 지원 및 2018회계연도 소방안전특별회계 결산잉여금, 지역자원시설세 증가분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이고,

1) 순계예산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산한 총계예산에서 회계간 전출입 등을 통한 자원의 중복계상된 부분을 제외한 실제적 재정규모를 말함.

- 재원조정사업은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2)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바, ‘19년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금 감액분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로 조정변경하는 것임.

2. 사업별 검토 의견

가. 세입 예산안(소방안전특별회계)

- 소방재난본부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은 기정예산 8,455억 56백만 원 대비 1.9% 증액(156억 28백만 원)된 8,611억 84백만 원임.
- 이는 ‘자체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98억 26백만 원이 증가³⁾ 하고, ‘의존수입’에서 지역자원시설세 130억 82백만 원⁴⁾과 국고보조금 30억 24백만 원⁵⁾이 증가한 반면에,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 44억 58백만 원⁶⁾과 일반회계전입금 58억 46백만 원의

-
- 2)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소방안전교부세의 대상사업 등) ① 영 제10조의4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구분하며, 그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1. 중점사업: 중요하고 시급한 소방시설(소방장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안전시설의 확충, 소방안전관리 및 안전관리 강화 사업
 2. 재량사업: 중점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적인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의 확충, 소방안전관리 및 안전관리 강화 사업
- ② 시·도지사는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에 소방안전교부세를 재원으로 함을 표시하여야 한다.
- 3) '18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생긴 잉여금
(본편성액 2,820백만원 - 결산액 순세계 잉여금 12,646백만원 = 9,826백만원)
- 4) - 「지방세법」 제142조제1항제2호 :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및 토지(이하 이장에서 “특정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2018회계연도 결산결과 초과징수분임.
- 공시지가 상승(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에 따른에 따른 재산세 증가
서울시 2018년 공시지가 상승 비율(단독 7.3%, 공동주택 10.2%, 건물 3.0%)
- 5) 노후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간이 SP 설치 국고보조금 교부
(‘19년 고시원 561개소, 산후조리원 6개소 설치 6,048백만원*)
* 국비:시비:민간 = 1:1:1(국비 3,024, 시비 3,024, 민간 3,024)
- 6) '18년 소방안전교부세 확정 통보('18.12.28)
- 당초 24,750백만원(교부액 33,000백만원의 75%), 교부확정액 20,292백만원(교부확정액

감소에 따른 것으로 세부내역은 다음 표와 같음.

[표] 세입예산 세부 변경내역

(단위 : 백만원)

세 입			
구 분	2019 추경예산	2019 기정예산	증 감
합 계	861,184	845,556	15,628
1. 자체수입	17,735	7,909	9,826
◦ 사업외수입	14,981	5,155	9,826
- 순세계 잉여금	12,646	2,820	9,826
2. 의존수입	843,449	837,647	5,802
◦ 국고보조금 등	8,401	5,377	3,024
◦ 기타회계전입금	835,048	832,270	2,778
-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	297,549	284,467	13,082
- 소방안전교부세(75%)	20,292	24,750	△4,458
- 일반회계전입금	517,207	523,053	△5,846

나. 세출 예산안(소방안전특별회계)

1) 강일119안전센터 신설

(단위 : 천원)

예산과목 (통계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3,834,000	105,000	3,729,000	
시 설 비	3,834,000	105,000	3,729,000	부지매입비 3,000천원×1,243㎡

- 동 사업은 강동구 고덕·강일동 일대 재개발 및 택지개발⁷⁾로 인하여 거주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서울시민의 차별 없는 균등한 공공 소방안전서비스의 제공 및 안전사각지대를 해소코자 택지개발지구내에 119안전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의 27,055 소방분야 75%)



[그림] 강동구 고덕·강일동 일대 도시개발 현황 (2020년까지 약 81,476명 신규유입)

- 총 사업비 60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2년(2019년~2020년)간 추진할 목적으로 금회 기정예산 1억 5백만원 대비 37억 29백만원(355.1%)을 증가한 38억 34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금회 추정사유는 동 사업이 2018. 5월부터 추진⁸⁾되었으나, 2018. 9. 20일 공유재산심의⁹⁾에서 매입부지 내 미활용부지에 대한 활용방안 마련과 효율적인 청사 배치 등 구체적인 활용 계획을 수립할 것을 사유로 ‘보류’ 결정이 나고

3) 강동구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및 강일1~2지구 주택건설 조성사업 현황
- 위치 :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강일동 일원

구분	고덕·강일 지구	강일1~2지구
면적	1,660,535㎡	200,855㎡
수요인구	26,736명/11,140세대	27,748명/9,610세대
사업기간	2011.12.08.~2020.12.31	2005. 9.5~2014.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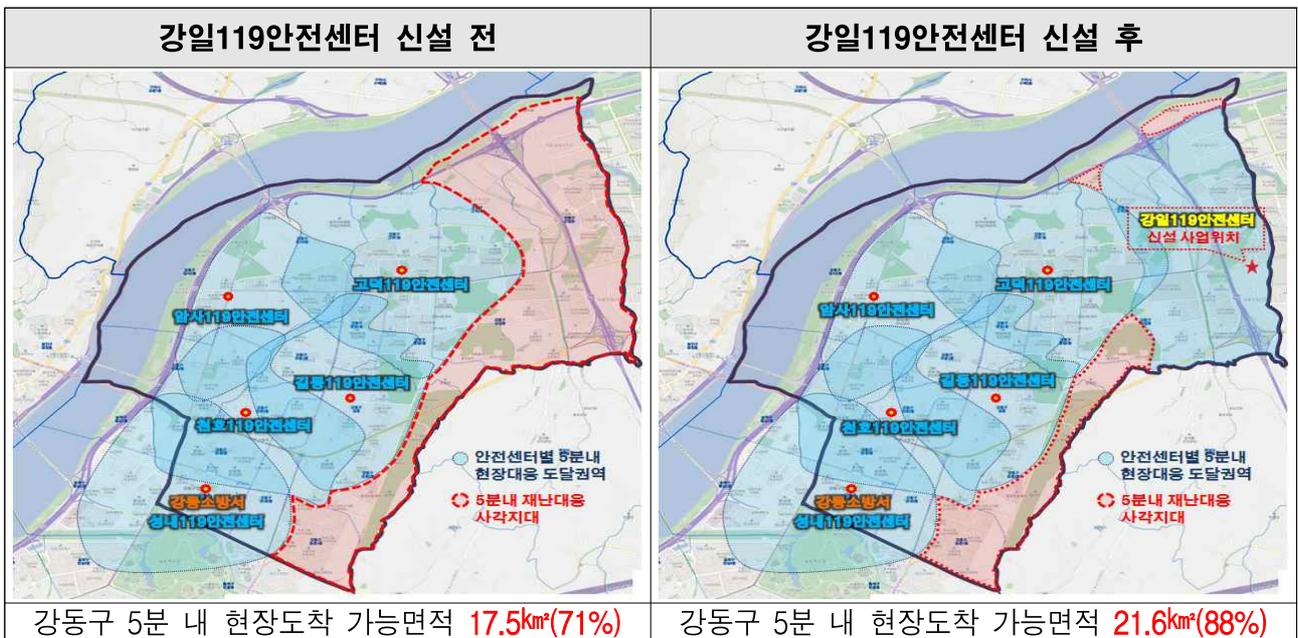


8) ‘강동소방서 「강일119안전센터」 신설계획’, 소방행정과-12858, 2018. 5.28

9) 제5차 공유재산심의 결과 : 보류결정(‘18. 9. 20.) ⇒ 제6차 공유재산심의 결과 “적정” 통과(‘18. 11. 12.)

- 보류결정 사유 : 개발사업지 내 토지를 매입하여 부지면적의 30%만 활용하는 등 미활용부지에 대한 활용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추후 여건 변화에 따른 필요시설 도입이 가능토록 청사 배치를 효율적으로 하는 등 구체적인 활용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자문함.

- 이후 2018. 11. 12일 “적정” 통과되면서 사전절차 이행이 지연됨에 따라 관련 사업비를 2019회계연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였으며, 시회의(예결위) 예산 심의과정에서 설계비만 편성되어 경계측량 및 지질조사 등을 위한 토지사용권이 필요해짐에 따라 금회 토지매입비 일부를 편성코자 하는 것임.
- 청사가 신축되면 소방인프라 확충으로 재난대응 5분권 내 출동여건이 조성되어 안전사각지대가 해소될 전망이어서 대시민 소방안전 서비스가 강화될 것으로 판단되나,



- 강동구 재난대응황금시간(5분 기준)내 소방력 현장대응 사각지대 현황 : **약29%**
 - 강동구 전체면적 24.59km² 중 7.01km² (강일동 일대 5.93km², 둔촌동 일부 1.08km²)

[그림] 강일119안전센터 신설시 강동구 재난대응 황금시간 확장범위 분석

- 공유재산심의에 철저히 대비치 못해 순차적으로 예산편성이 지연되는 상황이 나타난 것은 계획단계에서 준비가 부족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향후 사업추진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임.

2) 소방관서 시설물 유지보수

(단위 : 천원)

예산과목 (통계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15,632,705	13,413,242	2,219,463	소방청사 석면 제거, 저녹스 보일러 및 LED교체
기간제근무 자등보수	1,071,333	1,071,333		
사무관리비	413,498	413,498	-	
공공운영비	1,083,893	1,083,893	-	
시설비	12,895,228	10,675,765	2,219,463	- 소방청사 석면 제거 20,512㎡ 1,173,530천원 - 저녹스 보일러 교체 5,914천원×140대 = 827,960천원 - 소방청사 LED 2,394개 = 217,973천원
감리비	20,512	20,512	-	
시설부대비	8,241	8,241	-	
자산및물품취 득비	140,000	140,000	-	

- 동 사업은 소방청사의 각종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여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소방관서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계속사업으로, 금회 기정예산 134억 13백만원 대비 22억 19백만원(16.5%) 증가한 156억 32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금회 추경사유는 소방재난본부 산하 본부청사 및 소방서(24개), 119안전센터(93개) 등에서 1급 발암물질을 유발하는 석면의 제거와 2020년까지 공공청사 온실가스 25% 감축을 위한 저녹스 보일러 및 LED조명등을 교체하고자 하는 것으로,

[표] 소방관서 시설물 보수계획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계	석면제거	저녹스 보일러 교체	LED교체
규모		47개동 20,512㎡	140대 (저녹스 32대, 보일러 108대)	2,394개
예산	2,219,463	1,173,530	827,960	217,973

- 석면제거의 경우, 「석면안전관리법」 제3조 및 제6조¹⁰⁾ 및 「2018년 석면 안전관리 추진계획」¹¹⁾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현재 소방청사 47개동(20,512㎡)에 석면이 여전히 존재하여 24시간 상주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속히 제거할 필요성이 있으며,
- 저녹스 보일러 및 LED조명등 교체의 경우는 기존에 2015년 부 기후환경본부 주관으로 추진되어오던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2019년부터 ‘공공청사 온실가스 25% 의무감축을 위한 기관별 책임제’로 변경¹²⁾되면서 추진되는 사업임.
- 이에 따라 소방재난본부는 2016년도를 기준으로 “공공청사 온실가스 25% 감축”을 위해 전기는 16,445MWh에서 12,334 MWh로, 가스는 1,502,000㎡에서 1,127,000㎡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10) 「**석면안전관리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국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석면으로 인한 환경 및 국민건강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시행하는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부문별 또는 지역별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해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그 해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시기, 제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기후환경본부, 2018.03.09

12) 기후환경대기과-5791,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서울의 약속」 온실가스 추진체계 강화 및 감축사업 보완계획, 행정1부시장 방침 제96호, 2019.03.29

[표] 소방청사 온실가스 배출 현황

구 분	2016년 사용량	2020년 사용량(25% 감축)
전기(MWh)	16,445	12,334
도시가스(m³)	1,502,000	1,127,000

- 제시된 목표량의 경우 단순히 기준에 대한 감축 수치만을 나타낸 것으로 관서 신설 및 증축, 소방공무원 인력증원 등의 변동요인은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향후 25% 감축목표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되는 바,
- 예산투자 대비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개량화 된 평가방법 및 지표 등의 개발을 통해 좀 더 치밀한 계획 및 목표가 수립되어야 할 것임.

3) 업무용정수물품 및 기타 행정용품 구입

(단위 : 천원)

예산과목 (통계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1,482,665	947,225	535,440	개인장비 사물함 노후분 교체
자산및물품취득비	1,482,665	947,225	535,440	291천원 × 1,840대

- 동 사업은 소방본부 및 소방관서에 업무정수물품¹³⁾ 및 행정 운영 물품, 사무용 집기류 등을 교체 구매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 9억 47백만원 대비 5억 4천만원(56.5%) 증가한 14억 83백 만원을 편성함.

1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8조(물품관리기준의 설정), 지방자치단체 정수관리 대상 주요물품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6-12호, 2016. 3.20) 복사기 등 57종을 관리 운영

- 금회 추경사유는 소방관서별 개인사물함 전체 8,006개 중 내구연한(9년)이 경과한 1,840개(노후율23%)를 교체하고자 하는 것으로

[표] 소방관서별 개인사물함 현황 및 교체대상

보유수량	노후수량	노후율	비고
8,006개	1,840개	23.0%	

- 이는 최근 몇 년간 소방재원이 소방차량 및 장비에 집중적으로 투자되면서 노후율 및 확보율은 점차 개선¹⁴⁾되고 있는 반면에 업무용정수물품에 대한 자원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른 것으로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사기진작을 위해 적절한 예산 반영이라 생각됨.
- 다만, 금회 추경을 통해 교체하고자 하는 개인사물함 이외에도 사무용책상(노후율14%), 사무용의자(노후율32%), 사무실캐비닛(노후율12%) 등의 노후율도 상당한 만큼, 2020회계연도 본예산 편성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져야 할 것임.

[표] 주요 사무용 집기비품 노후률 : 평균19.8%

구분	①사무용책상			②사무용의자			③사무실캐비닛			④파일링캐비닛		
	수량	노후	비율	수량	노후	비율	수량	노후	비율	수량	노후	비율
수량	3,494	490	14%	3,993	1,267	32%	2,340	289	12%	1,736	311	18%

14) 소방차량 및 장비 노후율 개선 현황

구분	소방차량 노후율	개인보호장비 예비품 확보율	구조장비 노후율
2016년도	15.5%	100%	22.0%
2017년도	12.2%	100%	15.2%
2018년도	16.8%	100%	11.5%
2019년도(목표)	6.0%	110%	5.3%

4) 소방활동 지원

(단위 : 천원)

예산과목 (통계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21,684,120	21,243,120	441,000	소방관서 식당 취사도구 교체비
사무관리비	4,215,120	3,774,120	441,000	- 소방서 6,000천원×24개서 =144,000천원 - 안전센터 3,000천원×93개 센터 = 279,000천원 - 특수구조대 3,000천원×6개소 = 18,000천원
공공운영비	3,600	3,600	-	
행사운영비	39,200	39,200	-	
특정업무경비	16,936,200	16,936,200	-	
자산및물품취득비	30,000	30,000		
기타자본이전	460,000	460,000		

- 동 사업은 소방공무원 업무활동 지원을 통한 대시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후생복지 지원사업인 소방공무원 특정 업무경비, 비상출동대기 급식지원 등 처우개선을 통한 직원 만족도를 향상코자 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212억 43백만원 대비 4억 41백만원(2.1%) 증가한 216억 84백만 원을 편성하였음.
- 금회 추경사유는 소방공무원의 현장출동 대기를 위해 자체적으로 식당¹⁵⁾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취사도구(용품)가 장기간 사용되고 노후됨에 따라 이를 전면 교체해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양질의 식사를 제공코자 하는 것으로

15) 소방관서 식당운영 현황

(기준 : 1일 식수인원 평균)

구분	현장대응단(본서)	119안전센터	119특수구조단
식당운영 개소	24	93	6 (본대, 수난3, 산약1)
1일 평균 식수인원(3식기준)	173명	31명	31명

- 기존에 식당운영 취사도구 구매와 관련된 예산이 1개 식당을 기준으로 연 20만원씩 지원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 동 사업이 소방대원들의 기본적인 근무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적극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부분은 문제가 있다 사료되는 바, 향후 계획적인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5) 구급대 전문화 향상

(단위 : 천원)

예산과목 (통계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867,764	546,720	321,044	감염관찰실 설치비
사무관리비	546,720	546,720	-	
시설비	302,576	-	302,576	- 설계비 76,410천원×5,26%=4,026천원 - 관찰실 공간확보 135㎡×566천원=76,410천원 - 목동센터 난방시설 등 부대시설 교체 200,000천원 - 철거 및 폐자재 처리비 135㎡×164천원 = 22,140천원
자산및물품취득비	18,468	-	18,468	감염관찰실 운영 물품 구입

- 동 사업은 구급대 전문화 향상을 위해 구급대원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전문강사 초빙, 구조구급 정책협의회 운영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5억 47백만 원 대비 3억 21백만 원(58.7%) 증가한 8억 68백만 원을 편성하였음.
- 금회 추경사유는 최근 홍역, 메르스 등 대규모 감염병 발생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환자를 이송한 구급대원의 추적관리 및 관찰시스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의3¹⁶⁾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3조¹⁷⁾에 따라 감염병(의심)환자를 이송한 구급대원에 대한 별도 격리공간의 확보를 위해 양천소방서 목동 119안전센터의 일부공간을 개보수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것임.

[표] 감염 관찰실 설치계획(안)



- 기존에 구급대원들이 감염병(의심)환자를 이송 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귀소하거나 가정으로 돌아가 직원 및 가족들에 대한 2차 감염의 불안감이 높았으나,
- 이러한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면서 구급대원으로써의 자긍심을 가지고 구급업무에 전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긍정적인 예산 반영이라 사료됨.

1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의3(접촉자 격리시설 지정) ① 시·도지사는 감염병 발생 또는 유행 시 감염병환자등의 접촉자를 격리하기 위한 시설(이하 "접촉자 격리시설"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은 접촉자 격리시설로 지정할 수 없다.

② ~ ③ 생략

17)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3조(구조·구급대원에 대한 안전사고방지대책등 수립·시행) ① 소방청장은 구조·구급대원의 안전사고방지대책, 감염방지대책, 건강관리대책 등(이하 "안전사고방지대책등"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다만 동 사업이 완료되어도 대규모 이송 환자 발생 시 구급대원들의 격리공간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운용인력 대비 격리공간에 대한 적정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추가 설치 계획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 보임.

6) 의용소방대 활동수당 등

(단위 : 천원)

예산과목 (통계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3,407,365	2,643,045	764,320	의용소방대 피복구매
장학금및학자금	206,052	206,052	-	
의용소방대지원경비	3,181,313	2,416,993	764,320	- 의용소방대 피복구매 170천원×4,496명 = 764,320천원
민간인국외여비	20,000	20,000	-	

- 동 사업은 다양화되는 도시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단체인 의용소방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26억 43백만 원 대비 7억 64백만 원 (28.9%) 증가한 34억 7백만 원을 편성함.
- 금회 추경사유는 「의용소방대 복제세칙」¹⁸⁾이 2018. 12. 4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피복의 구매 및 보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동복 등 총 5종을 전면 교체하여야 하나 우선적으로 동절기 기동복 2종(상, 하의)과 하절기 활동복만을 보급하려고 하는 것임.

18) 「의용소방대 복제 규칙」, 소방청 훈령 제63호 일부개정(2018. 12. 4. 시행)

의용소방대원 의복디자인 제안안도 - 기동복 set 4



동·하절기 기동복 상·하의 시안 (4종)



의용소방대원 의복디자인 제안안도 - 활동복 set 1



하절기 활동복 상의 시안 (1종)



[그림] 의용소방대 복제 개정 시안

- 따라서 의용소방대원들이 통일된 복장을 착용하고 현장에서 일사분란하게 활동해 재난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교체되지 못한 하절기 기동복(상, 하의) 2종에 대한 예산확보 계획도 조속히 강구되어야 할 것임.

7) 화재저감 소방안전대책 추진

(단위 : 천원)

예산과목 (통계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7,563,360	1,515,360	6,048,000	노후고시원 561개소, 산후조리원 6개소 간이 S/P 설치지원
사무관리비	160,860	160,860	-	
행사운영비	20,000	20,000	-	
기타보상금	8,000	8,000	-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00	200,000	-	
시 설 비	1,022,500	1,022,500	-	
민간자본사업 보조	6,048,000	-	6,048,000	- 노후 고시원 및 산후조리원 간이 S/P설치 지원 16,000천원/3(매칭비율)× 567개소×2(국비,시비)=6,048,000천원
자산및물품 취득비	104,000	104,000	-	

- 동 사업은 화재피해 저감을 위해 취약대상에 대한 선제적 예방대책을 시행하고 중점 관리대상을 선정하여 대상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고 하는 사업으로, 금회 기정예산 15억 15백만 원 대비 60억 48백만 원(399.2%) 증가한 75억 63백만 원을 편성하였음.
- 금회 추정사유는 종로구 소재 국일고시원¹⁹⁾ 화재로 인해 숙박형 다중이용업소(고시원, 산후조리원)에서 화재발생시 대량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소방청에서 화재안정성을 확보하고자 국고보조사업(2019회계연도 정부추경 편성요구)²⁰⁾으로 스프링클러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편성함.

[표] 서울시 간이 S/P 미설치 현황

<단위 : 개소>

서울시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문	영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강동
	14	13	25	10	34	46	31	27	34	26	26	35
945	마포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성동
	30	6	34	21	307	21	12	16	114	24	14	25

※ 서울시 총 고시원 개수 5,706개소 중 SP 미설치 939개소 (16.5%)
 ※ 서울시 총 산후조리원 개수 154개소 중 SP 미설치 6개소 (3.9%)
 - 광진 1, 은평 3, 서초 1, 중랑 1

19)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

- 위치 : 종로구 관수동 149-1
- 발생일 : 2018.11. 9. 오전 7시 30분경
- 건물규모 : 지하1층, 지상3층,
- 건축허가 : '83. 8월
- 인명피해 : 사망 7명, 부상 11명, 이재민 26명,
- 재산피해 : 백만원

20) 국가, 자치단체, 업주의 각각 1:1:1 비율로 추진함.

- 최근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용객의 대부분이 저소득층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 사회적인 배려차원에서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사업은 긍정적이라 판단되나, 일부 비용을 업주 측에서 부담해야 하는 상황으로 인해 부정적인 반응도 염려스러운바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추진실적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임.
- 참고로, 금회 추경에서 주택건축본부 사업 중에도 마찬가지로 스프링클러 설치지원을 위한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지원’ 사업이 12억 8천만원 증액된 27억 8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 이는 2012년부터 주택건축본부 주관으로 추진하던 사업으로 2019년 지원신청 결과 신청한 고시원이 기 확보된 예산규모를 초과함에 따라 금년 신청 업주까지만 지원코자 하는 것이며 금년까지만 주택건축본부가 사업을 추진하고 앞으로는 소방재난본부가 모두 이관 받아 시행할 예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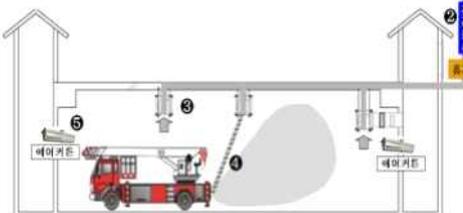
8) 소방서 차고 매연배출저감장치 설치

(단위 : 천원)

예산과목 (통계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735,000	165,000	570,000	소방관서 매연배출저감장치 38대 설치
시 설 비	735,000	165,000	570,000	- 매연배출저감장치 15,000천원×38대 = 570,000천원

- 동 사업은 소방서 차고 내에서 출동 및 점검시 발생하는 매연이 실내에 체류되어 소방대원들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침에 따라 소방서 차고 내에 매연배출저감장치를 설치해 미연 및 유해물질로부터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 1억 65백만 원 대비 5억 70백만 원(345.4%) 증가한 7억 35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음.

[표] 매연배출저감장치 설치 개요

구분	설명	사진
천장덕트형 흡입식	차고 천장에 흡입덕트와 주름관을 설치, 주름관을 소방차 배기구에 수동으로 연결하여 배출하는 방식 - 미국, 유럽 주요국가에 사용하는 방식 - 매연배출효율은 바닥매립형보다 뛰어남	
		

- 금회 추경사유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부응하는 한편, 가급적 신속한 유해가스의 차단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미설치 소방서 중 금년도에 공급·설치가 가능한 38대분만을 우선 배정한 것임.
- 동 사업은 2017년도 추경예산 2억원을 반영하여 3개 119안전센터(소방차 16대)²¹⁾에 설치하고 2018년도에 사업효과 평

가²²⁾를 실시한 결과, 실내공기질이 비정상범위에서 정상범위로 개선되고 특히 디젤배출물(EC) 농도가 안전범위로 유지되어 시스템의 효용성은 인정되나

- 동 사업에서 장착하고자 하는 장치는 2005년도 중소기업진흥청과 소방방재청의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으로 추진되어 특허 출원을 받아 설치비 예산에 대한 원가분석 등의 자료가 미비한 실정이며 1개 업체 독점사업임을 감안할 때,
- 소방재난본부는 업체가 제시하는 가격에 무조건 따라 갈 것이 아니라 철저한 원가분석을 통해 근거를 제시하고 가격을 조정·협상하여 합리적인 구매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임.

9) 소방차량 교체 및 보강

(단위 : 천원)

예산과목 (통계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825,000) (소3,920,522) 15,166,000	(×825,000) (소8,379,000) 15,166,000	(×-) (소△4,458,478) 0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 감소에 따른 조정분
자산및물품 취득비	(×825,000) (소3,920,522) 15,166,000	(×825,000) (소8,379,000) 15,166,000	(×-) (소△4,458,478) 0	

- 동 사업은 화재·구조·구급 등 다양한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소방장비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자 장시간 사용으로 성능이 저하된 펌프차 및 물탱크차 등을 신형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금회 기정예산 151억 66백만원에서 소방안전교부세

21) 영등포소방서 현장대응단, 서대문소방서 흥은 119안전센터, 동대문소방서 휘경119안전센터

22) 가천대학교, 산업공해연구소, 서울소방학교가 공동으로 수행

교부액 44억 58백원(29.3%)이 감소함에 따라 재원 조정을 하고자 하는 것임.

- 이는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²³⁾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 교부되는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9년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이 2018.12.31.일자로 83억 79백만원에서 44억 58백만원 감액된 39억 2천만원으로 최종 통보됨에 따라 부족분을 일반회계 전입금을 증액하여 충당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음.

10) 화재조사 업무의 전문화

(단위 : 천원)

예산과목 (통계목)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1,223,350	223,350	1,000,000	법령개정장비(11종280점) 및 화재증거물 감정센터 장비(15종40점) 확보
사무관리비	173,150	173,150	-	
자산및물품 취 득 비	1,050,200	50,200	1,000,000	- 법적 화재조사장비 보강(11종 280점) = 600,000천원 - 화재 증거물 감정센터 장비확보(15종40점)= 400,000천원

- 동 사업은 화재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 발화원인 등의 화재정보를 제공하여 화재피해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화재현장 유해물질로부터 화재조사관의 안전확보 및 물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2억 23백만 원 대비 10억 원(448.4%) 증가한 12억 23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음.

23)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소방안전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 분야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의 의견을 들어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현황, 소방 및 안전시설 투자 소요, 재난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금회 추경사유는 「소방기본법」 제29조²⁴⁾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화재조사 업무에 사용되는 화재조사장비와 관련하여 동법 시행규칙이 2018.10.25일 개정²⁵⁾되어 화재조사를 위한 감식, 감정 및 분석 시험장비 등 11종 280점을 추가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며,

[표] 법령개정 추가장비

배치부서	장비명	수량	용도
본부	3D스캐너	1	화재현장 실내·외 스캐닝(화재 현장 분석 및 보존)
본부	슈미트해머	1	콘크리트 강도 (화염노출 정도) 측정
본부	내시경카메라	1	육안 확인이 어려운 지점 감식 및 촬영(자동차 화재 감식)
본부	폭발압력측정기 세트	1	폭발압력 측정(폭발 재현실험)
본부	전압조정기(직류, 교류)	1	전압 조정이 가능한 변압기(전기장비 제현실험)
본부	적외선 분광광도계	1	시료 성분 분석(인화성 액체 성분 분석)
본부	항온항습기	1	화재조사 분석실 온도 및 습도 제어
24소방서	항온항습기	24	화재조사 분석실 온도 및 습도 제어
본부1, 소방서24	휴대용랜턴	149	야간 및 어두운 실내 화재조사시 사용
본부1, 소방서24	오토데시케이터	25	증거물 건조기능
본부1, 소방서24	휴대용 진공청소기	25	증거물 분석 잔해물 청소시 사용

24) 「소방기본법」 제29조(화재의 원인 및 피해 조사)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화재의 원인 및 피해 등에 대한 조사(이하 "화재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화재조사의 방법 및 전담조사반의 운영과 화재조사자의 자격 등 화재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5)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별표6) 화재조사전담부서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 및 시설 (18. 10.25. 개정)

배치부서	장비명	수량	용도
본부1, 소방서24	외장형하드	50	화재현장 사진 및 영상 등 기록 저장시 사용

- 또한 화재 증거물 감정을 위해 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충남 아산소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강원도 원주 소재), 한국전기안전공사(전북 완주 소재) 등 외부기관에 감정의뢰를 하면 1개월 이상의 장시간이 소요되어 화재조사관련 업무에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여 소방행정타운 종합훈련타워 내에 ‘화재 증거물 감정센터’를 직접 운영²⁶⁾하고자 함에 따른 것임.

[표] 화재 증거물 감정실 위치 및 현황



- 이와 관련하여 2019회계연도 예산심의 당시 우리 상임위에서도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화재조사전담부서에 갖추어야 할 장비 및 시설 보유기준을 조속히 충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한 바 있으며,
- 「서울특별시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시행되

26) 현장대응단-4774, 「화재 증거물 감정센터」 운영 계획, 2019.3.19

고²⁷⁾ 있는 상황에서 관련 부족 장비구매 및 감정실 운영에 대한 예산 편성은 적절하다 사료됨.

- 다만, 2020년부터 운영예정인 ‘화재 증거물 감정센터’의 경우 현재 감정을 의뢰하고 있는 외부전문기관들과 같이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갖추기 위해서는 향후 별도의 법적 근거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우수한 인력의 확보도 이루어져 그 취지를 잘 살려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됨.

27) 제정일: 2018.10.4, 시행일: 2018.10.4